첨부1. 사전화재위험평가 등 산정방법

화재위험유발지수의 산정방법

1.1 화재강도지수의 산정

화재강도지수는 다음 수식에 의해 산출한다.

사고강도점수= (건축물 안전점수 + 피난능력 + 화재특성(다항))/3

1.2 화재확률지수의 산정

화재확률점수는 다음 수식과 같이 산정한다.

화재확률점수 = 기본점수 × 업소형태별 가중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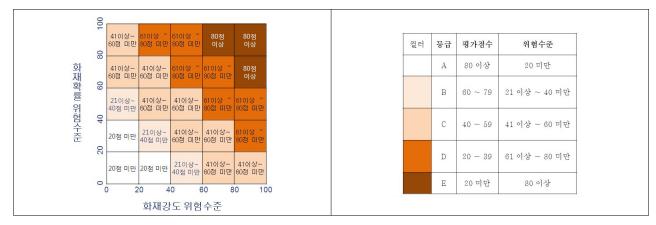
1.3 위험도 매트릭스 및 등급산정

평가점수는 다음 표에 따라 화재강도 위험과 화재확률 위험으로 환산한다.

화재강도 화재확률 점수 위험 점수 위험 80 이상 20 미만 80 이상 20 미만 $60 \sim 79$ 21 이상 ~ 40 미만 $60 \sim 79$ 21 이상 ~ 40 미만 41 이상 ~ 60 미만 40 ~ 59 40 ~ 59 41 이상 ~ 60 미만 20 ~ 39 61 이상 ~ 80 미만 20 ~ 39 61 이상 ~ 80 미만 20 미만 20 미만 80 이상 80 이상

표 5.1.1 평가점수에 대한 위험수준 환산표

환산한 위험수준에서 화재강도 위험은 다음 그림의 가로축 점수에 화재확률 위험은 다음 그림의 세로축 점수에 대입한다.



위험수준 매트릭스

2.1 사고확률지수(기본점수 x 가중치)

가. 기본점수

대분류	중	분류	세부항목									
화재	전기	사용량	4kW 미만		4kW 이상	100kW o	기상 10,0		000kW 초과	20		
	_ ,			1	l00kW미만	10,000kW	이하					
원인			5		4	2		0		1		
(50점)		배선정리	잉	ত্র				량				
				5				0				
		접지/본딩		지				음				
				5	1 -1 -1 -1 -1	2 = 1 -1 -1		0		-		
		보호장치	없음	,	누전차단기 0	과류차단	7]		둘 다	-		
		근미	5 없음		3 업소내 한	3 정디 기여	어 스	.1] Z-] F	0 반적인 지역	10		
		-류및			집조대 안	생된 시력	취소	1대 신학	반작인 시학	10		
	가:	스취급	10		5	5		(C			
	난.	로사용	중	· 아	·		개	별		10		
				0			1					
	딭	·뱃불	금지		업소내	지정장소	업소내부 전역			5		
			5			3	<u>업</u>	0				
	성년	ᇂ/양초		금지		5						
. Nan	70	n) & 1)		5		014 1 -		0	A) 0	1.5		
예방	교육	및 훈련	구분 업주만		년 1회 10	2년 1 3 5	0		없음	15		
활동					10	5			0	1		
			업주와 종업원		15	8						
(50점)	방재조	< 진	있음(별도조직+ 업	주참		 도조직)		<u>0</u> 없음		10		
	0/11-	- 1	여)	. –					. –			
			10		1	5		(†			
	일일전	 보건	S)	음			없	음		10		
		др		.0				0				
	정리정	성돈상태		용도			2)부=	속용도		5		
	1)+2)		불량		양호	불량			양호]		
			0		5	0			5			
	예방점	성검	1)법정점)수시점			10		
	1)+2)	지적없 2건여	기하	3건이상	년2회	년		없음			
	1, 2,	•	음			이상		상		. I		
			5 3		0	5	:	3	0			

나. 업소 형태별 가중치

구분	가중치
일반음식점	1.00
휴게음식점	1.00
단란주점	1.00
유흥주점	1.00
비디오물감상실업	1.00
게임제공업	1.00
노래연습장업	1.00
복합유통제공업	0.95
찜질방 100인 이상	0.95
그 외 찜질방	0.90
산후조리원	1.00
고시원	1.00
휴게텔(수면방)	1.00
PC방	1.00
화상대화방(전화방)	1.00
콜라텍	1.00
평균	1.00

2.2 사고강도지수([건축점수+피난점수+소방안전점수]/3)

가. 건축점수(100점)

			평가항목				배점	
건축	가연성재료		난연/	성재료	준불연 재	20		
내장재	0		1	0				
실내		변성재료		준불연재5	로.	불연재료	20	
장식물	방염 없음		방염					
	0		. 8	15		20		
방화	구분		없음 또는	는 불만족	있음	· 또는 만족	30	
구획	기준만족			O		10		
7 4	건물공용피난복도	구획				15		
	타업소와의 구	-획						
	타업소구획+ 피난복	·도구획						
경계벽 및	불연성		난역	변성		15		
간막이	15		1	8				
방화시설	폐쇄 또는 훼손		변경행위/장애	물/용도장애 등	양호	15		
유지관리	0			8	15			

나. 피난점수(건축물 피난안전점수 + 업소피난안전점수;100점)

(1) 건축물 피난안전점수(40점)

평가항목												
직통	1개			2개	3개				4개 이			
계단 수량	0			10	15				20	15		
복도			실이 있					^닉 실 있음				
의	기준 불만족	기준	만족	1.5배 이상	기준 불	만족	기준	만족	1.5₺	배 이상	8	
너비	0		3	5	0 3		3		5	O		
보행	가.	막다른	는 복도 유	-무	나. 거실	나. 거실 각부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						
거리 ^{주1)}	없음			있음		30m 이상 ~ 50m 이하		15m 초과 ~ 30m 이하		15m 이하	8	
	3		0		0	2		5		10		
건축물		스프링클	러 없음		스프링클러 있음							
바깥쪽	보행거리 불	만족	보호	생거리 만족	보행거리 불만족 보행거리 만족							
으로의										5		
출구 ^{주2}	0		2		2		5					
옥상	-17 4-1	z		1 -1 -1 -11 -1								
옥상 광장 ^{주3)}	기준 불만	속	(^{보치비대상}	설치대상			설치 비대상			4	
	0			3		3		5				

주1) 복도의 너비기준

- 해당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²이상인 경우 : 1.5m이상(양 옆에 거실), 1.2m 이상(그외 복도)

- 유흥주점/단란주점, 영화상영관

· 바닥면적 500m²미만 : 1.5m 이상

· 바닥면적 500m² 이상 ~ 1000m²미만 : 1.8m 이상

· 바닥면적 1000m²이상 : 2.4m 이상

주2) 복도보행거리점수 : 나 점수 - 가 점수

주3) 보행거리기준:

- 직통계단에서 출구 : 50m(내화구조), 30m(그외 구조)

- 거실 각부분에서 출구까지의 거리 : 100m(내화구조), 60m(그외 구조)

(2) 업소피난안전점수(40점)

				평가항목	1					배점		
건물내	지하2층 이상	ス	하1층	지상층~	·지상2층	지상3	층~지상: 층	10	지상11층 이상	4		
업소위치	0		2		4		2		0	4		
출구의 수		배치기	준 불만족	-			배치	기준 만족	Ť			
및 배치	1개		개	3개 이상			2개		3개 이상	10		
	0		2	5			5		10			
업소출구 폭 ^{(주1}	최소폭	미만		최소폭	최소폭 이상 ~1.5배 미만			1.5배 이상				
	()		3				6				
탈출 경로의	복도		직통계단 직접연결			피닌	피난층과 피난층의 직상층에 위치					
형태	4		3				5					
영업장내부	3회 이상	-		2회		1회		구부러짐 없음				
통로의 굴곡	0			2		3			4	4		
업소내부	양	옆에 거	실이 있-	은		한쪽에만 거실			있음			
복도의너비	기준 불만족	기준	만족	1.5배 이상	기준	불만족	기준	만족	1.5배 이상	4		
주2)	0	3	3	4		0	3	3	4	1		
출입구까지	30m 이상 20r			m 초과 ~	-	lOm 초과	~		10m이하			
의 보행거리	3011 978		30m이하		20m이하	-		10111-101	4			
주3)	0			2		3			4			
피난안내도			있음									
74\ 11\ 5-	7 -1 7 22	()					3		3		

주1) 업소 출구 최소폭

- 개별 출구 최소 유효 너비
 - · 영화상영관 및 소극장 관람석 :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0.6미터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이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해서는 최소 1.5미터 이상
 - · 그외: 0.9m
- 출구의 유효 너비 합계
 - · 영화상영관 및 소극장 관람석 :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0.6미터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
 - · 그 외 : 출구의 개수 * 0.9m 이상

주2) 업소내부 복도의 너비

- 고시원

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: 1.5m이상양옆에 거실이 없는 경우: 1.2m이상

- 그 외의 경우
 - 용도별로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복도 폭 적용
 - · 건축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소 복도 폭은 1.2m로 적용
- 해당 층 전체를 업소가 사용하는 경우로써 용도의 특성상 업소내부에 복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 는 경우 다음 각 항목에 따른다.
 - · 탁자나 테이블, 난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분되어 출구로 연결되어 사람이 통행하는 주 통로의 폭을 복도폭으로 결정하고, 이 통로로 양쪽 또는 한쪽으로 사람의 유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양쪽 거실이 있는 구조 또는 그외 구조로 판단
 - · 탁자나 테이블, 난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, 설치된 출구 폭의 1.5배를 복도 폭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양쪽에서 유입 가능한 거실이 있는 경우로 판단
- 주3) 출구까지의 보행거리 : 업소 출입구에서 가장 먼 거실의 각부에서 출입구까지의 거리

(3) 경보 및 피난설비(20점)

평가항목													
경보	자동화지	내탐지설	비상	비상벨설비		비상벨설비 단독경보		보형감지	가스감지및		자동화?	재속보설	8
설비	Н	ון				기		자동차단장치]			
	ĥ	무	유	무	유	무	유	무	유	무			
피난	비상	조명	유.	도등	휴대용비	비상조명	피난	기구	인명구	조기구	8		
설비	유	무	유	무	유	무	유	무	유	무			
제연	설키	치비대상		•		フ]ブ	계적 제연			4			
설비				거실제	연	복도제연			계단실				
근미		2		2		3			4				

다. 소방안전점수(100점)

평가항목													
소화기	없음	또는 불	를 량		내부통로		구	획실마다	-		업소전체	10	
		0			1		3 5						
옥내	없음	또는 불	·량					있음				15	
소화전					적용					적용대상	아님		
, –	*1.0	0	11		5		N1			10	1-9 1 1		
스프링	없음	또는 불	불당	업소	소에 만		복도및		업소 5		전체건물	20	
클러 또						건물	공용지역	건	물공용	지역			
는 간이		0			10		10		20		25		
1													
형													
소방	비상다	ዘ응조직	없음				비상대	응조직_	있음			15	
조직				훈련	-		훈련 있음				만 훈련 있음		
				없음			독립 상근		업주		독립 상근		
					구성 자율 조직		조직		구성 자율 조직		조직	-	
		0		0	· ·		10		<u>至</u> 母		7	-	
소방				0	정기점검		10			/ 			
	5	없음또는					양호				체 수시점검	10	
시설		내우 불량			, == 2 0					,	7 7 7 2 2		
점검		0			3			5			10		
소방		없음			업주만		종업원만			업	주와 종업원	10	
안전													
교육		0			5			5			10		
위험물	피닌	: 경로상(에 있을	경우	到;	난경로상 여	에 없을 경	우		우	험물	20	
취급시	• == ==	1 = -1	77 L	n -	,	1 == -1	7 7 7			취급기	시설 없음		
설 방호	스프링	[글다		무 등 로비	스프링	정글디	물분무 설1						
	6 1	п	-		ò	П	_				90	_	
설비	유 10	무 0	유 10	무 0	유 15	무 0	유 15	무 0	-		20		
	10	U	10	1 0	10	U	10	U					